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553,005	13,036,590
일반회계	391,619,306	11,748,579
특별회계	42,933,699	1,288,011
공기업특별회계	26,532,972	795,9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882,398	566,4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50,574	229,517
기타특별회계	16,400,727	492,022
주택사업특별회계	401,969	12,05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6,490	3,795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47,615	10,4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4,916	51,447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28,368	27,85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85,968	17,5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38,576	16,157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255,129	187,65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54,917	73,6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33,468	70,00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13,311	21,399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08,71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